

【 17 】 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6. 7. 15.

제출자 : 양 주 군 수

□ 제안이유

- 동조례 운영에 따른 주차장법 관련조항 인용의 불부합사항을 수정하기 위함임.

□ 주요골자

- 주차장법 관련조항 인용의 불부합사항 개정(안 제1조)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중“제21조의2 제3항”을 “제21조의2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차장법(이 하 “법”이라한다)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개의 설치관 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21조의2 제4항 ----- ----- ----- -----</p>